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3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최종윤·김진표·박홍근

윤준병 • 이용빈 • 인재근

임오경·장경태·최혜영

한준호 · 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 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 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 게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60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편의· 상담·치료·훈련 등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5(유류물품의 처분) 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운영자는 사망 장애인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 장애인의 잔여 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⑤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의 경우에는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5 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1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
				편의・상담・치료・훈련 등 서
				비스를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
				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
				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u>할 수 있다.</u>
<u><신 설></u>				제60조의5(유류물품의 처분) ①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자는 사망 장애인의 상속
				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u>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u>
				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u>사망 장애인의 잔여재산이</u>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
				<u>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u>
				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
				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 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 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 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 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 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⑤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제34조 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

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 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